

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3.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수정이유

개정안 조문이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의 예외적인 조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함(안 제12조의2제1항 및 안 부칙 제2조).

수정주요내용

- 가. 조직위원회는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을 명시함(안 제12조의2제1항).
- 나. 이 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명시함(안 부칙 제2조).

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의2제1항 중 “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”를 “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 중 “종전의 규정”을 “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설>	<u>제12조의2(기부금품의 접수 등) ① 조직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품에	제12조의2(기부금품의 접수 등) ① ----- -----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 ② (개정안과 같음) 부칙 제2조(경과조치) ---- ----- ----- -----

	대하여는 <u>중전의</u> <u>규정</u> 에 따른다.	-----「기부금 <u>품의 모집·사용</u> <u>및 기부문화 활</u> <u>성화에 관한 법</u> <u>률</u> 」-----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종배의원 · 박수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5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5.

발 의 자 : 이종배 · 박수현 · 김용태
조승래 · 성일종 · 임호선
박정현 · 문진석 · 이재관
강승규 · 이강일 · 장종태
복기왕 · 박덕흠 · 어기구
김종민 · 이개호 · 엄태영
박용갑 · 이정문 · 황정아
장철민 · 이광희 · 송재봉
강준현 · 이연희 · 박범계
황명선 · 장동혁 의원
(2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,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·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,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.

이에,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

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12조의2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개정안 조문이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의 예외적인 조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함(안 제12조의2제1항 및 안 부칙 제2조).

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기부금품의 접수 등) ① 조직위원회는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(기부금품의 접수 등)</u> ① <u>조직위원회는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 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 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 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